

##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 특별시장**

## [몬스타쉐프공창] 정보공개서

[(주)비오비에프앤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 .

### [(주)비오비에프앤비]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17길 24-1(행당동)

전화 : 02)2295-5955

팩스 :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02)2295-5955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 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별첨 서류**

※ 당사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는 정확한 내용 및 별첨 서류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는 당사의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내용의 일부가 공개되지 않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상 호        | (주)비오비에프앤비                 | 영업표지    | 몬스타쉐프곰창      |              |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17길 24-1(행당동) |         |              |              |
| 법인설립등기일    | 사업자등록일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2024.01.11 | 2024.01.24                 | 유성열     | 02)2295-5955 | -            |
| 법인등록번호     | 110111-8841507             | 사업자등록번호 |              | 686-86-03241 |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주 소                        |              |        |
|------|-------|---------|----------------------------|--------------|--------|
| 사내이사 | 유성열   | 몬스타쉐프곰창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17길 24-1(행당동) |              |        |
|      |       |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         | 유성열                        | 02)2295-5955 | -      |
| 관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주 소                        |              |        |
| 감사   | 조원진   | 몬스타쉐프곰창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17길 24-1(행당동) |              |        |
|      |       |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         | 유성열                        | 02)2295-5955 | -      |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 인수·합병 여부                                                | 기업명         | 영업표지     | 인수·합병일     | 주 소                 | 대표자 |
|---------------------------------------------------------|-------------|----------|------------|---------------------|-----|
| 가맹본부((주)비오비에프앤비)가 다른 기업(주식회사더몬스터컴퍼니)의(몬스타쉐프곰창)가맹사업을 인수함 | (주)더몬스터 컴퍼니 | 몬스타쉐프 곰창 | 2024.02.20 | 서울시 송파구 새말로 152, 1층 | 최중환 |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 (앞으로 『몬스타쉐프곰창』이라 합니다)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 구 분       | 내 용                                                                               | 추가 설명                                                                                 |
|-----------|-----------------------------------------------------------------------------------|---------------------------------------------------------------------------------------|
| 명 칭       | 『몬스타쉐프곰창』                                                                         |                                                                                       |
| 상 호       | 『몬스타쉐프곰창』 _____ 점                                                                 |                                                                                       |
| 상표(서비스표)  |  | 출원번호 : 4020170152869<br>출원일 : 2021.11.29.<br>등록번호 : 4013878350000<br>등록일 : 2018.08.16 |
| 광 고       |                                                                                   |                                                                                       |
| 그 밖의 영업표지 |                                                                                   |                                                                                       |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 연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매출액 | 영업손익 | 당기순이익 |
|------|------|------|------|-----|------|-------|
| 2023 | -    | -    | -    | -   | -    | -     |
| 2022 | -    | -    | -    | -   | -    | -     |
| 2021 | -    | -    | -    | -   | -    | -     |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당사는 2024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여부         | 이름  | 현 직위 | 사업경력           |      |         |
|--------------|-----|------|----------------|------|---------|
|              |     |      | 기간             | 직위   | 담당 업무   |
| 가맹사업<br>관련임원 | 유성열 | 대표   | 2024.01.11.~현재 | 대표이사 | 회사업무 총괄 |
|              | 조원진 | 이사   | 2024.01.11.~현재 | 이사   | 업무감사    |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 ▶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점            | 임원수(명) |     | 직원수(명) |
|---------------|--------|-----|--------|
|               | 상근     | 비상근 |        |
| 2023년 12월 31일 | -      | -   | -      |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칭                   | 권리내용 | 출원일자 및<br>등록일자                       | 출원번호 및<br>등록번호                                 | 상표권자    | 존기간<br>만료일 |
|----------------------|------|--------------------------------------|------------------------------------------------|---------|------------|
| 몬스타쉐프<br>Monsterchef | 서비스표 | 출원<br>2017.11.29<br>등록<br>2018.08.16 | 출원번호<br>4020170152869<br>등록번호<br>4013878350000 | (주)초이스팜 | 28.08.16   |

- ▶ 당사가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소유권자((주)초이스팜)로부터 상표사용을 승낙 받아 위 표에 기재된 가맹본부의 사용기간까지 당사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몬스타쉐프곱창』가맹사업 현황

1. 『몬스타쉐프곱창』을 시작한 날 : 가맹계약 체결사실이 없습니다.  
(직영점을 시작한 날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 『몬스타쉐프곱창』 연혁

| 가맹본부 상호      | 영업표지     | 대표자 | 가맹사업 경영 기간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주식회사 더몬스터컴퍼니 | 몬스타쉐프 곱창 | 최중환 | 2021.03 ~ 2024.01.10 | 서울시 송파구 새말로 152, 1층        |
| (주)비오비에프앤비   | 몬스타쉐프 곱창 | 유성열 | 2024.01.11.~현재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17길 24-1(행당동) |

3. 『몬스타쉐프곱창』 업종

| 영업표지    | 업종   |           |
|---------|------|-----------|
| 몬스타쉐프곱창 | 대분류  | 소분류(주요상품) |
|         | 기타외식 | 곱창        |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말 영업중인 『몬스타쉐프곱창』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수 (단위: 개)

| 지역 | 2021.12.31 |      |      | 2022.12.31 |      |      | 2023.12.31 |      |      |
|----|------------|------|------|------------|------|------|------------|------|------|
|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 전체 | -          | -    | -    | -          | -    | -    | -          | -    | -    |
| 서울 | -          | -    | -    | -          | -    | -    | -          | -    | -    |
| 부산 | -          | -    | -    | -          | -    | -    | -          | -    | -    |
| 대구 | -          | -    | -    | -          | -    | -    | -          | -    | -    |
| 인천 | -          | -    | -    | -          | -    | -    | -          | -    | -    |
| 광주 | -          | -    | -    | -          | -    | -    | -          | -    | -    |
| 대전 | -          | -    | -    | -          | -    | -    | -          | -    | -    |
| 울산 | -          | -    | -    | -          | -    | -    | -          | -    | -    |
| 세종 | -          | -    | -    | -          | -    | -    | -          | -    | -    |
| 경기 | -          | -    | -    | -          | -    | -    | -          | -    | -    |
| 강원 | -          | -    | -    | -          | -    | -    | -          | -    | -    |
| 충북 | -          | -    | -    | -          | -    | -    | -          | -    | -    |
| 충남 | -          | -    | -    | -          | -    | -    | -          | -    | -    |
| 전북 | -          | -    | -    | -          | -    | -    | -          | -    | -    |
| 전남 | -          | -    | -    | -          | -    | -    | -          | -    | -    |
| 경북 | -          | -    | -    | -          | -    | -    | -          | -    | -    |
| 경남 | -          | -    | -    | -          | -    | -    | -          | -    | -    |
| 제주 | -          | -    | -    | -          | -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몬스타쉐프곱창』가맹점 수



(단위: 개)

| 사업연도 | 연초      | 신규개점 | 계약종료 | 계약해지 | 명의변경 | 연말 | 증감 |
|------|---------|------|------|------|------|----|----|
| 2021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2022 |         |      |      |      |      |    |    |
| 2023 |         |      |      |      |      |    |    |

6. 『몬스타쉐프급창』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구 분 | 상호/이름 | 영업표지 | 정보공개서<br>등록번호 | 업종 | 가맹점/직영점의 수 |            |            |
|-----|-------|------|---------------|----|------------|------------|------------|
|     |       |      |               |    | 2021.12.31 | 2022.12.31 | 2023.12.31 |
|     |       |      | 해당사항 없음       |    |            | -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 지역 | 2023년<br>가맹점 수 |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                  |              |                  |              | 비고 |
|----|----------------|-------------------------|--------------|------------------|--------------|------------------|--------------|----|
|    |                | 연간 평균 매출액               |              | 연간 평균<br>매출액(상한) |              | 연간 평균<br>매출액(하한) |              |    |
|    |                | 연간 평균<br>매출액            | 면적<br>3.3㎡ 당 | 상한               | 면적<br>3.3㎡ 당 | 하한               | 면적<br>3.3㎡ 당 |    |
| 전체 |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서울 |                |                         |              |                  |              |                  |              |    |
| 부산 |                |                         |              |                  |              |                  |              |    |
| 대구 |                |                         |              |                  |              |                  |              |    |
| 인천 |                |                         |              |                  |              |                  |              |    |
| 광주 |                |                         |              |                  |              |                  |              |    |
| 대전 |                |                         |              |                  |              |                  |              |    |
| 울산 |                |                         |              |                  |              |                  |              |    |
| 세종 |                |                         |              |                  |              |                  |              |    |
| 경기 |                |                         |              |                  |              |                  |              |    |
| 강원 |                |                         |              |                  |              |                  |              |    |
| 충북 |                |                         |              |                  |              |                  |              |    |
| 충남 |                |                         |              |                  |              |                  |              |    |
| 전북 |                |                         |              |                  |              |                  |              |    |
| 전남 |                |                         |              |                  |              |                  |              |    |
| 경북 |                |                         |              |                  |              |                  |              |    |
| 경남 |                |                         |              |                  |              |                  |              |    |

|    |  |  |  |  |  |  |  |  |
|----|--|--|--|--|--|--|--|--|
| 제주 |  |  |  |  |  |  |  |  |
|----|--|--|--|--|--|--|--|--|

- ▶ 2023년 가맹계약 체결 사실이 없어 가맹점 연간 평균 매출액 산출 자료가 없습니다.
-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본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 8. 『몬스타쉐프곰창』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 『몬스타쉐프곰창』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 영업중인 가맹점 수 | 평균 영업기간 |
|------|------------|---------|
| 2023 | -          | -       |

※ 2023년 가맹계약 체결 사실이 없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 당사는 『몬스타쉐프곰창』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 ▶ 당사는 2023년에 『몬스타쉐프곰창』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없습니다.

## 11. 가맹금 예치

-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한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치기관의 상호 | 담당지점  | 주소               | 예치기관의 전화번호  |
|----------|-------|------------------|-------------|
| 신한은행     | 길동 지점 |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64 | 02-482-1531 |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는 가맹계약체결 후 가맹금 예치신청서를 귀하에게 교부합니다.
2. 귀하는 가맹금 예치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가맹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3. 귀하의 입금 내역은 당사로 등록정보가 전달됩니다.
4. 귀하는 예치후 예치금 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관리할 수 있습니다.

- ▶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에 작성하여 신한은행에 계약 체결일에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 ▶ 귀하는 신한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몬스타쉐프곰창』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기타 정한 품목 외 별도 구입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 최초 가맹금

▶ 당사의 최초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반환 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합계       | 8,800 |              |                                                                  |                                                          |                                     |
| 초도가맹비    | 5,500 |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10조를 위반한 경우<br>2.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반환할 경우 미경과 잔여계약기간을 일할로 계산한 금액을 반환한다 |
| 개점 전 교육비 | 3,300 |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 1. 교육시작 1일전에 계약해지<br>2.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1.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br>2. 영업을 개시되거나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                                     |

#### 2) 보증금, 담보목적물 등 계약 종료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되는 대가

▶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당사에서 수령하는 보증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없음)

|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 반환 조건           | 비고                                                                     |
|---------|-------|--------------|---------------------------------|-----------------|------------------------------------------------------------------------|
| 합계      | 2,000 |              |                                 |                 |                                                                        |
| 계약이행보증금 | 2,000 |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 당사 제공물품 등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담보 | 계약 종료 시 정산 후 반환 | 1. 계약종료 시 잔존채무액을 공제 후 상호, 서비스표 등 당 가맹사업과 관련된 영업표지의 철거가 완료된 후 정산함을 원칙으로 |

|  |  |  |  |  |                          |
|--|--|--|--|--|--------------------------|
|  |  |  |  |  | 함<br>2. 반환 시 미지급금액<br>공제 |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 「가맹사업법」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구분       | 금액     | 비고     |
|----------|--------|--------|
| 합계       | 10,800 | 부가세 포함 |
| 초도가맹비    | 5,500  | 부가세 포함 |
| 개점 전 교육비 | 3,300  | 부가세 포함 |
| 계약이행보증금  | 2,000  | 부가세 없음 |

4) 최초 가맹금 외에 필수설비, 정착물, 인테리어 비용, 최초로 공급되는 상품의 비용, 정해진 기간을 넘길 때 추가로 생기는 금융비용 등 그 밖의 필요비용

- ▶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99㎡ 기준 | 면적 3.3㎡당 금액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 비고                              |
|------------------------|------|-----------|-------------|----------------------------|----------------------------------------------------------|---------------------------------|
| 합계                     |      | 93,908    | 3,130       |                            |                                                          |                                 |
| 필수설비<br>(주방집기,홀집기)     | 협력업체 | 32,000    | 1,066       | 입고일 3일전                    | 1. 공사발주 전 계약취소<br>2.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후에 반환 될 수 없음 | 면적의 증감 및 시장 상황에 따라 비용이 상이할 수 있음 |
| 인테리어<br>(점포 내장공사)      | 협력업체 | 51,480    | 1,719       | 계약 시 30% 착공 시 50% 잔금 시 20% |                                                          |                                 |
| 간판                     | 협력업체 | 6,160     | 205         | 설치일 3일전                    |                                                          |                                 |
| POS                    | 협력업체 | 968       |             |                            |                                                          |                                 |
| 초도물품 등                 | 협력업체 | 3,300     |             | 공급 3일전                     | 감가없는 미사용 제품                                              |                                 |
| 기타정착물<br>(CCTV, BPS 등) | 협력업체 | 별도협의      |             |                            |                                                          |                                 |

- ※ 인테리어(내장공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브랜드의 명성과 통일성은 물론 업체의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시공업체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 상기 금액은 매장실측 및 본사, 시장 상황에 따라 지불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특수상권은 해당 특수상권 측 시공기준 적용 시 전체 투자비가 증가 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인테리어, 설비, 정착물에는 철거공사, 전기승압, 전기증설, 냉난방, 도시가스, 정화조, 정화조, 화장실, 외부상하수도, 가설칸막이, 바닥콘크리트타설, 외장추가, 소방공사, 자동문, 외부환풍, 어닝, 데크, 간판추가, 탁자추가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 비용이 부담되며, 야간공사 진행여부, 특수상권 입점 시 특수상권 공사 기준, 면적의 증감 및 시장 상황과 인테리어 컨셉의 변화 등에 따라 비용이 상이할 수 있음에 유의 바랍니다.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매장의 크기, 구조, 점주 선택사양, 구입품목, 구입수량, 설치 기간을 초과하여 생기는 추가 비용 등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시공내역 및 지급대상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비용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관리 감독 준수 : 사업장 집기, 기기, 간판 등은 가맹사업의 동일성과 독창성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당사가 정한 매뉴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자체 시공하는 경우 당사는 당사의 기준에 맞게 시공되는지 관리, 감독 할 수있으며 이러한 대가로 전체 면적 기준 3.3m<sup>2</sup> 당 지불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3일 이내에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구 분 | 관리, 감독의 대가 비용          |
|-----|------------------------|
| 비 용 | 금삼십삼만원(₩330,000/부가세포함) |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선정 주체 | 당사 조언 요청  | 선정 기준                                                              |
|-------|-----------|--------------------------------------------------------------------|
| 가맹희망자 | 요청이 있는 경우 | 담당자 배정→가맹희망자 선정 사업장 방문→입지 및 상권분석<br>→분석 및 결과 타당성 유무 통지→가맹희망자 최종 결정 |
|       | 요청이 없는 경우 | 가맹희망자 입지 도출→입지 선정 조언→가맹희망자 최종 결정                                   |

※ 점포선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입지 선정 시 최종결정은 반드시 가맹희망자가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점포의 하자 및 권리의 하자 등의 사유로 당사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 입지선정의 지연으로 인해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교육기준             | 계약·채용기준                                     |
|--------|------------------|---------------------------------------------|
| 가맹점사업자 |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br>만19세 이상일 것 (보건증 소지자) |
| 종업원    |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 만18세 이상일 것 (보건증 소지자)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위와 같은 설비 등 전문품은 외부에서 구입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구입이 어렵고 구입하더라도 전문적인 시공 및 설비공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및 A/S문제 발생 시 추가적인 비용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사와 협의하여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귀하의 가맹금 납부 절차

▶ 귀하는 계약 체결 시에 가맹금을 일시에 전부 납부하여야 하며, 가맹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 귀하는营业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지급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상표사용료 등 정기지급금 (로열티) | 가맹본부 | 2,420원/㎡                   | 매월 10일             | 반환없음       | 영업표지,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사용대가, 경영지원 등의 대가로 소멸성임 |    |
| 광고분담금               | 가맹본부 | 당사의 기준에 의해 가맹점사업자와 배분하여 부담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광고 미집행시 반환 | 광고 집행시 반환 안됨                             |    |
| 판촉분담금               | 가맹본부 | 행사별로 부담                    | 통지를 받은             | 판촉 미집행 시   | 판촉 집행 시 반환 안됨                            |    |



|                                |      |          |                |                              |                     |                                                                         |
|--------------------------------|------|----------|----------------|------------------------------|---------------------|-------------------------------------------------------------------------|
|                                |      |          | 날로부터<br>10일 이내 | 반환                           |                     |                                                                         |
| 교육훈련비                          | 가맹본부 | 실비로 사전통지 | 교육실시<br>이전     | 교육비<br>납부 후<br>실시하지<br>않는 경우 | 교육 시행 후<br>반환 안됨    |                                                                         |
| 영업표지<br>변경등에 따른<br>간판변경 비용     | 공급업체 | 교체 실비    | 간판 등<br>변경 이전  |                              | 제작 또는 변경<br>후 반환 안됨 | 부득이한 경우<br>변경될 수<br>있으며,<br>교체비용은<br>당사자의<br>귀책사유 등을<br>고려하여<br>합의하여 결정 |
| 인테리어 시설,<br>각종 기기의<br>교체, 보수비용 | 공급업체 | 실비       | 교체보수<br>이전     |                              | 제작또는 변경<br>후 반환 안됨  | VII. 1.<br>점포환경 개선<br>시 비용 참조                                           |
| 점포환경<br>개선비용                   | 공급업체 | 실비       | 변경 이전          |                              | 제작 또는 변경<br>후 반환 안됨 | VII. 1.<br>점포환경 개선<br>시 비용 참조                                           |
| POS 사용료                        | 공급업체 | 월 30~50  |                |                              |                     |                                                                         |
| 지연이자                           | 가맹본부 | 연15%     | 지급기일<br>익일부터   | 후불로<br>반환없음                  |                     | 지급기한을<br>경과했을 시<br>부담                                                   |

※ 가맹사업을 위한 필요 또는 운영방침과 각 가맹점의 영업방식에 따른 혜택(당사 물품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로열티 감면혜택)부여 등으로 로열티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물품 발주 및 미수금 총당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 중 동등하게 상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미수금 또는 연체금이 계약이행보증금의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발주차단 및 계약갱신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독항목  | 내용                        | 시기 | 비고         |
|-------|---------------------------|----|------------|
| 회계처리  |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 수시 | 문의 : 가맹관리팀 |
| QSC관리 |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운영 상태 조사      | 수시 | 문의 : 가맹관리팀 |

#### 4) 가맹점사업자의 독립적인 지위에 따른 책임

-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의 동반자이자 협력자이며, 가맹본부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기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가맹본부로부터 지원 및 통제를 받아 영업을 하기 때문에 외관상 가맹본부와 동일한 사업주체로서 인식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자기의 명의로 계산으로 영업을 하는 법률적 독립된 사업주체이기도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법적, 세무적으로 독립된 사업체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며, 가맹점영업의 결과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귀속됩니다.** 따라서 위임과 대리, 사용자와 피용자, 동업자 관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가맹본부의 귀책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관계에서 문제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

-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별도로 납입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에서 귀하는 당사와 재계약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이전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가맹본부와 계약관계가 유지됩니다. 다만,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 당사가 가맹점운업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

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은 최초 계약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려는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비용

- ▶ 귀하가 운영하는 『몬스타쉐프곰창』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인은 당사에 교육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완전한 계약기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규계약에 준하여 당사에 가맹비,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6. 가맹점 운영권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에 나와 있습니다.

#### 4) 계약 기간만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한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 미불금을 즉시 지불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 등을 취해야 합니다.

| 계약 종료 후의 조치                                                                                                                                                                                                                                                                                                                                                                                                                                                       | 계약서  |
|-------------------------------------------------------------------------------------------------------------------------------------------------------------------------------------------------------------------------------------------------------------------------------------------------------------------------------------------------------------------------------------------------------------------------------------------------------------------|------|
| ①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없이 매장, 전화번호부, 온라인 등 영업 관련 장소에서 가맹본부의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매뉴얼, 운영양식, 운영파일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 기간에 대하여 지체 일(日)당 일금 일십만원(₩1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연손해금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br>② 가맹본부는 위 제1항의 조치가 완료됨을 확인하는 즉시 계약이행보증금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채무, 손해배상금 등 담보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br>③ 위 제1항의 철거·원상복구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되,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한다. | 제40조 |
| ⑤ 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등으로 인하여 종료한 때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공급된 상품 등의 중에서 완전물을 가맹본부에 반환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가맹본부는 공급가격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8조 |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몬스타쉐프곰창』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수급 및 경영환경의 변화와 신메뉴 개발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용역이 변동되거나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다른 품목으로 교체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몬스타쉐프곰창]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 명칭 | 관계 |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br>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 경제적 이익의<br>내용 | 비고 |
|----|----|--------------------------------|---------------|----|
|----|----|--------------------------------|---------------|----|

|  |  |      |  |  |
|--|--|------|--|--|
|  |  | 해당없음 |  |  |
|--|--|------|--|--|

※ 당사는 2023년 가맹계약 체결 사실이 없어 실제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몬스타쉐프곰창』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당사의 운영방침 및 매뉴얼을 준수하고,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상품을 무단 삭제하여서도 안됩니다.

귀하는 아래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 또는 운영방침 및 매뉴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아래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상품·용역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시 책임                                                  | 비고 |
|-------------|----------------------------------------------------------------|---------------------------------------------------------|----|
| 몬스타쉐프 소곱창   | 왼쪽에 기재된 제품을 판매하지 않거나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사전에 필히 가맹본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판매 | 1회 위반: 구두 경고<br>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br>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    |
| 몬스타쉐프 소대창   |                                                                |                                                         |    |
| 몬스타쉐프 소오픈대창 |                                                                |                                                         |    |
| 몬스타쉐프 소막창   |                                                                |                                                         |    |
| 몬스타쉐프 소염통   |                                                                |                                                         |    |
| 몬스타쉐프 소간양   |                                                                |                                                         |    |
| 몬스타쉐프 소특양   |                                                                |                                                         |    |
| 몬스타쉐프 소스테이크 |                                                                |                                                         |    |
| 몬스타쉐프 양념특양  |                                                                |                                                         |    |
| 몬스타쉐프 소양념대창 |                                                                |                                                         |    |
| 몬스타쉐프 양밥    |                                                                |                                                         |    |
| 더 쫄깃한 특양왕만두 |                                                                |                                                         |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 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상대방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시 책임                                             | 비고 |
|------------------|--------------------------|----------------------------------------------------|----|
| 경쟁업체             |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 1회 위반 : 구두경고<br>2회 위반 :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및 미 시정시 계약해지 |    |
| 다른 가맹점사업자        |                          |                                                    |    |
| 만19세미만 청소년(미성년자) | 주류 판매금지                  |                                                    |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 귀하는 당사가 제시한 권장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해당 판매가격을 조율할 수 있으며 권장가격은 별도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2023.12 기준)

| 상품 · 용역명                    | 권장가격(단위: 원) | 가격 통보 방법                                 | 비고   |
|-----------------------------|-------------|------------------------------------------|------|
| 곱창덮밥                        | 10,000원     | 온·오프라인(개별<br>매장, 홈페이지<br>등)을 통해 사전<br>통지 | 1인분  |
| 막창덮밥                        | 12,000원     |                                          | 1인분  |
| 대창덮밥                        | 12,000원     |                                          | 1인분  |
| 곱창국수                        | 11,000원     |                                          | 1인분  |
| 몬스터쉐프양밥                     | 3,000원      |                                          | 1인분  |
| 계란찜                         | 5,000원      |                                          |      |
| 얼큰한곱창라면                     | 6,000원      |                                          | 1인분  |
| 소곱창구이(1인분)                  | 15,900원     |                                          | 180g |
| 소대창구이(1인분)                  | 15,900원     |                                          | 180g |
| 소막창구이(1인분)                  | 15,900원     |                                          | 180g |
| 소특양구이(1인분)                  | 15,900원     |                                          | 160g |
| 소염통구이                       | 9,500원      |                                          | 180g |
| 몬스터모듬곱창(1인분)_곱창.대창.막창.특양.염통 | 19,500원     |                                          | 250g |
| 쉐프모듬곱창(1인분)_곱창.대창.막창.염통     | 17,500원     |                                          | 200g |
| 곱창전골(중)                     | 23,500원     |                                          |      |
| 곱창전골(大)                     | 35,000원     |                                          |      |
| 더 쫄깃한 특양왕만두(5개)             | 6,000원      |                                          |      |
| 츄러스스틱만두(2개)                 | 5,000원      |                                          |      |
| 소주/맥주                       | 4,000원      |                                          |      |
| 막걸리                         | 4,000원      |                                          |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가격은 물가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

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업종 범위                     |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         |
|-------------------------------|-------------|---------|
|                               | 가맹본부        | 계열회사    |
| 곰창, 대창, 막창 등 구이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 몬스타쉐프곰창     | 해당사항 없음 |

※ 귀하의 영업지역에 당사 또는 당사의 계열사의 [몬스타쉐프곰창]과 동일한 업종의 브랜드를 추가 입점하지 않습니다.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설정기준                                                                                                                                                                        | 설정방법                                                                                                                                                          |
|-----------------------------------------------------------------------------------------------------------------------------------------------------------------------------|---------------------------------------------------------------------------------------------------------------------------------------------------------------|
| ※ 계약매장에서 반경 300m를 원칙으로 함<br>※ 영업지역 내 특수상권(백화점, 대형쇼핑몰, 대형마트, 시장, 호텔, 리조트, 공항, 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지하상가, 대형병원, 관공서, 대학교 등)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되는 별도의 영업지역이며, 특수상권의 영업지역은 특수상권 내로 한정됨 | ※ 영업지역확인서 상 지도별점을 원칙으로 하며, 지도에 영업지역을 표시함(단, 경계선을 불포함하며 표시 안쪽 지역임) 지도별점이 없을 경우 계약서상의 영업지역 설정기준에 따름<br>※ 특수상권은 영업지역확인서 상 지도에 표시되지 않아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된 별도 지역임 |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 재조정 절차                                                                             | 동의를 얻는 방법                                                                            |
|-----------------------------------------------------------------------------------------------------------------------------------------------------------------------------------------------------------------------------|------------------------------------------------------------------------------------|--------------------------------------------------------------------------------------|
| 1.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br>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br>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br>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의 의사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br>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

##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보장받은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



## 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몬스타쉐프급창』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 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 당사는 『몬스타쉐프급창』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영업표지           | 취급품목                        | 가맹점과의 구분                              |
|-----|----------------|-----------------------------|---------------------------------------|
| 가맹점 | 몬스타쉐프<br>냉장고24 | 소곱창, 소대창, 소막창 등의<br>소포장된 제품 | HMR, 밀키트 등의 간편<br>조리 식품으로<br>세부업종이 다름 |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경영정책에 따라 향후 공급할 수 있습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 특수상권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되며, 가맹본부는 특수상권에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본부는 특수상권에 가맹점을 개설하는 경우 필요에 의해 해당 지역 가맹점사업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 연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
|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가맹점                   | 기타 오프라인 | 자사 온라인몰       | 기타 온라인 |
| 2023 | -                     | -       | -             | -      |

※ 2023년 오프라인, 온라인 매출액이 없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 연도   |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
|------|--------------|-------------|
| 2023 | 0%           | 0%          |

※ 2023년 오프라인, 온라인 매출액이 없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 및 수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

## 1) 가맹계약의 기간 및 계약 갱신 기간

- ▶ 「몬스타쉐프곰창」 가맹사업의 최초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2 ]년**입니다. 다만,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재계약기간은 갱신일로부터 **만[ 2 ]년**입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 「가맹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 서                                                        | 기 간<br>(계약만료일: D-day) |
|------------------------------------------------------------|-----------------------|
| ① 귀하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 D-180 ~ D-90          |
| ②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예→④, 아니오→③                    | D-180 ~ D-90          |
| ③ 당사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 D-180 ~ D-90          |
| ④ 당사가 귀하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br>예→B, 아니오→A      | ①+15일 이내              |
| ⑤ 귀하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                       |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br>입니까? 예→B, 아니오→D |                       |
| ⑦ 당사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br>예→B, 아니오→⑧        | D-180 ~ D-90          |
| ⑧ 귀하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br>예→D, 아니오→A         | D-60일 이전              |
|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       |
|-----------------------------------------------------------------------------|-------|
|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 D-day |
|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 계약 갱신 시 이행 사항                                                                                                                                                    | 관련 계약 조문 |
|------------------------------------------------------------------------------------------------------------------------------------------------------------------|----------|
| ⑦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갱신 시 다음 각 호를 계약갱신일 전까지 이행하여야 한다.<br>1.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대한 상품대금, 대여금 및 기타비용 등 모든 금융상의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여야 한다.<br>2. 계약갱신 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새로운 가맹계약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38조 7항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본부의 정당한 계약 갱신요구 거절 사유                                                                                                                                                                                                                                                                                                                                                                   | 관련계약조문  |
|-------------------------------------------------------------------------------------------------------------------------------------------------------------------------------------------------------------------------------------------------------------------------------------------------------------------------------------------------------------------------------------------|---------|
| 1. 가맹 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br>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br>3.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 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면허, 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br>4.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br>5.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는 경우<br>6.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교육, 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제38조 1항 |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해지 사유                                                                                                                                                                                                                                                          | 관련계약조문  |
|-------------------------------------------------------------------------------------------------------------------------------------------------------------------------------------------------------------------------------------------------------------------|---------|
|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br>1. 가맹점사업자가 원·부재료, 교육비, 가맹비, 정기납입금 등 대금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 제39조 1항 |

|                                                                                                                                                                                                                                                                                                                                                                                                                                                                                                                                                                                                                                                                                                                                                                                                                                                           |  |
|-----------------------------------------------------------------------------------------------------------------------------------------------------------------------------------------------------------------------------------------------------------------------------------------------------------------------------------------------------------------------------------------------------------------------------------------------------------------------------------------------------------------------------------------------------------------------------------------------------------------------------------------------------------------------------------------------------------------------------------------------------------------------------------------------------------------------------------------------------------|--|
| 2. 가맹점사업자가 매출정보, 운영정보 등을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br>3.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br>4.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br>5.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영업양도, 승계, 담보제공, 사업자 위치변경을 한 경우<br>6. 영업상 비밀공개 의무위반이나 경업금지 위반을 한 경우<br>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br>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약정한 광고 및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br>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 · 개량 · 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br>10.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원 · 부재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품질기준을 위반한 경우<br>11.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공방법, 종류(메뉴 등), 판매방법, 서비스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운영하는 경우<br>1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운영 매뉴얼이나 세부운영 규칙을 위반한 경우<br>13. 가맹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가맹본부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훼손한 경우<br>1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br>13. 가맹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가맹본부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훼손한 경우<br>1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즉시계약 해지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제39조 2항 |
|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
|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
|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br>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br>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

|                                                                                                                                                                                                                                       |  |
|---------------------------------------------------------------------------------------------------------------------------------------------------------------------------------------------------------------------------------------|--|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
|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
| 6.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
|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
|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수정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⑧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 수정 사유 발생 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다. | 제38조 8항 |

| 재조정 절차                                                                     | 동의 절차                                                                  |
|----------------------------------------------------------------------------|------------------------------------------------------------------------|
|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br>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 6) 특수상권 입점에 따른 유의사항

- ▶ 특수상권은 로드상권과 달리 백화점, 대형쇼핑몰, 대형마트, 시장, 호텔, 리조트, 공항, 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지하상가, 대형병원, 관공서, 대학교 등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가맹희망자가 특수상권 내 가맹점 입점 요구가 있는 경우 특수상권 내에 가맹점이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다만, 특수상권

의 입점을 위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특수상권 임대인에 의해 특수상권 내 가맹점의 입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특수상권에 입점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명의로 특수상권 임대인과 임대차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수상권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요청 또는 합의에 의해 가맹본부의 명의로 특수상권 임대차 관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독립된 지위에서 특수상권 임대인과 임대차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과 수익, 점포 운영 등 특수상권 내 가맹점 입점 및 운영에 관한 모든 비용과 책임 및 위험을 부담합니다. 이는 특수상권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가맹본부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특수상권 내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모든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는 명의여하를 불문하고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특수상권 내에 입점을 요청하고, 실제운영을 행하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는 임차인의 명의여하를 불문하고 특수상권 임대차계약서 상의 모든 계약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특수상권에 입점을 하는 가맹점사업자는 특수상권 내 가맹점의 운영에 대한 정보를 가맹본부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는 특수상권과의 기본 계약 상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나. 가맹점사업자는 특수상권 내 매장 운영권 양도, 담보 제공 등 그 용어에 상관없이 매장운영과 관련한 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 일체의 행위는 특수상권 임대인과의 사전 합의가 없는 경우 금지됩니다.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목 또는 나목을 위반하여 특수상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명의여하를 불문하고 특수상권 내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거절 또는 해지, 종료될 경우 계약거절 또는 매장운영 및 영업의 종료와 관련한 어떠한 비용도 가맹본부에게 청구할 수 없고, 특수상권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기간만료, 자동종료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등 가맹점사업자가 더이상 가맹점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맹점의 철거, 원상복구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와 관련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 ▶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가능 조건                           | 가능시 필요한 절차                                                                                            | 비고          |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br>가맹점 운영 기준을<br>준수할 것 | 가맹점사업자가 30일 전 서면으로 양도 신청→당사 담당부서<br>검토→승인 여부 통지→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br>체결→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가맹점 운영 인수인계 | 문의<br>가맹관리팀 |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하는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서면에 의한 승인이 없는 한 해당 가맹계약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를 전대차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 ▶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 구분   | 가능여부(조건)       | 이전 범위                             | 절차                                                                     | 기타 의무사항                                 |
|------|----------------|-----------------------------------|------------------------------------------------------------------------|-----------------------------------------|
| 상속   | 상속인 사후<br>통지 시 | 모든 권리의무                           | 상속개시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br>서면으로 상속신청->당사 담당팀<br>검토->승인 여부 통지->가맹점운영권<br>상속완료 | 상속이 인정될 시<br>가맹비는<br>면제한다, 단<br>교육비는 부담 |
| 대리행사 | 본부 승인 시<br>가능  | 가맹점사업자<br>가 지정한<br>범위 내의<br>권리·의무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대리행사<br>신청->당사 담당팀 검토->승인여부<br>통지->가맹점운영권 대리행사 절차<br>완료   |                                         |
| 위탁경영 | 불가능            | -                                 | -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 ▶ 당사는 이 계약기간 중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가맹계약 종료 후 1년 내 가맹본부의 동의나 승낙 없이 대한민국 전 지역 내에서 귀하가 『몬스터쉐프급창』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업금지되는 업종 | 경업허가 절차                                                          | 비고         |
|-----------|------------------------------------------------------------------|------------|
| 급창 전문점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br>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가량 소요)→허가여부통지→완료 | 문의 : 가맹관리팀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당사는 『몬스타쉐프곰창』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장 영업시간            | 영업일수          | 비 고        |
|--------------------|---------------|------------|
| 15:00 ~ 04:00 (익일) | 365일 연중 무휴 영업 | 문의 : 가맹관리팀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 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해야 할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담당팀에 통지하고, 휴업일로부터 3일전에 이를 게시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장 종업원수 | 직접 근무 여부 | 대체 가능 인력      | 비고                |
|---------|----------|---------------|-------------------|
| 4명      | 직접 근무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 점주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통보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귀하는 가맹점 점포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점포의 위생 및 청결을 유지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과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감독 항목     | 감독 절차                                                  | 빈도 및 시기 | 담당팀   | 비고 |
|--------------|--------------------------------------------------------|---------|-------|----|
| 품질(Quality)  |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 수시      | 가맹관리팀 |    |
| 서비스(Service) | 담당자 매장 방문 → 서비스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         |       |    |
| 청결(Clean)    |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         |       |    |
| 회계 감사        | 담당자 매장 방문 → 회계장부나 POS검사 → 감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         |       |    |

※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귀하에게 영업장 관리·감독에 관한 필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그 밖의 준수사항                                                                                                                                                                                                                                                                                                                                                                                                                                                                                                                                                                                                                                                                                                                                                                                                                                       | 관련계약조문 |
|-------------------------------------------------------------------------------------------------------------------------------------------------------------------------------------------------------------------------------------------------------------------------------------------------------------------------------------------------------------------------------------------------------------------------------------------------------------------------------------------------------------------------------------------------------------------------------------------------------------------------------------------------------------------------------------------------------------------------------------------------------------------------------------------------------------------------------------------------|--------|
| <p>제21조 (운영매뉴얼 준수 및 감독 · 시정요구권)</p> <p>① 가맹점사업자는 [ 몬스타쉐프급창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독창성이 유지 되도록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운영매뉴얼이나 세부운영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작성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배포한 운영 매뉴얼이 가맹본부에 의하여 수시로 변경, 수정, 보완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p> <p>③ 가맹점사업자는 점포에 항상 매뉴얼 사본을 최신으로 보관하여야 하고, 매뉴얼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가 사용하고 있는 매뉴얼 원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p> <p>④ 가맹본부는 [ 몬스타쉐프급창 ]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독창성의 유지, 소비자 보호,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경영활성화 및 경영지도 등을 위하여 가맹본부의 직원을 파견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경영 및 운영상태 전반에 대해 영업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이때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직원이 자유로이 점포에 출입하고 영업상태를 원활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p> <p>⑤ 점포의 점검은 청결, 위생, 회계처리, 각종 설비관리, 상품 관리 등의 상태를 대상으로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 점포의 운영을 점검하기 이전에 미리 관리기준을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관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⑥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에 대한 운영점검 결과를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지적된 사항을 시정조치하며 그 결과를 즉시 가맹본부에게 통보해야 한다.</p> | 제21조   |

##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 ▶ 당사는 몬스터쉐프곰창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광고 성격                  | 부담비율  |                                          | 분담 절차                                                 | 비고                 |
|----------|------------------------|-------|------------------------------------------|-------------------------------------------------------|--------------------|
|          |                        | 본사부담  | 가맹점부담                                    |                                                       |                    |
| 광고       | 브랜드 및 상품광고             | 50%   | 광고비 50%중 광고 시행 직전 분기의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산정 |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 광고 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광고 → 사후결과 공고 | 대중 매체 광고 등 (전국 행사) |
|          | 상품광고 및 가맹점모집광고         | 75%   | 광고비 25%중 광고 시행 직전 분기의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산정 |                                                       |                    |
|          | 가맹점 모집광고               | 100%  | 없음                                       |                                                       |                    |
| 판촉       | 할인판매, 경품제공, 이벤트 등 판촉활동 | 균등 부담 | 균등 부담                                    | 판촉 계획 공고 → 가맹점 판촉 참여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광고 → 사후결과 공고       |                    |
| 기타 개별 행사 | 행사에 따라 달라짐             |       |                                          | 상동                                                    |                    |

- ※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상기 분담절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다만, 부담비율은 가맹본부 및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 귀하는 귀하의 비용으로 귀하의 영업 지역 내에서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광고물, 기타 선전매체의 제작, 배포 등에 있어 당사의 표준지침 및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관련 계약 조문 |
|------------------------------------------------------------------------------------------------------------------------------------------------------------------------------------------------------------------------------------------------------------|----------|
| <p>③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 지역 내에서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판촉활동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p> <p>④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별 개별 판매촉진 및 광고활동을 위한 팸플렛, 전단, 리플렛, 카탈로그 기타 판촉물을 제작할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의 대표전화와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이메일을 동시에 기재하여야 한다.</p> | 제25조     |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관련 계약 조문 |
|---------------------------------------------------------------------------------------------------------------------------------------------------------------------------------------------------------------------------------------------------------------------------------------------------------------------------------------------------------------------------------------------------------------------|----------|
| ①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br>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매뉴얼,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br>③ 가맹점사업자는 이 계약기간 중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가맹계약 종료 후 1년 내 가맹본부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자신 또는 제3자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못한다.<br>④ 가맹점사업자가 동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을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후 위반하는 경우 가맹본부에게 금 이천만원(₩ 20,000,000)을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41조     |

##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                                                                                                                                                                                                                                                                                                                                                                                                                                     | 관련 계약 조문 |
|---------------------------------------------------------------------------------------------------------------------------------------------------------------------------------------------------------------------------------------------------------------------------------------------------------------------------------------------------------------------------------------------------------------------------------------------------|----------|
|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서에 기재된 손해배상이나 위약벌 규정 외에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br>② 가맹점사업자는 법적, 세무적으로 독립된 사업체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여, 가맹점 영업의 결과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귀속된다. 따라서 위임과 대리, 사용자와 피용자, 동업자 관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가맹본부의 귀책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관계에서 문제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br>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44조     |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을 위한 상담 협의 과정에서부터 실제 가맹점이营业을 개시할 때 까지 필요한 절차 및 기간과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포함, 99㎡(약30평)-신규개설 기준)

| 구분             | 내용                                                       | 소요기간        | 소요비용                                |
|----------------|----------------------------------------------------------|-------------|-------------------------------------|
| 합계             |                                                          | 47일 내외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br>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참조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접수<br>-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D-47        |                                     |
| 사업 설명 · 상담     |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br>-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br>- 가맹희망자 상담 | D-46~45     |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입지선정<br>-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필요시 실시      |                                     |
| 최종 협의          | - 개설 승인                                                  | D-34~31     |                                     |
| 가맹계약 체결        | - 계약 체결                                                  | D-30        |                                     |
| 가맹금 예치         | - 예치기관에 가맹금 예치                                           | D-29(1일)    |                                     |
| 점포실측/설계        | - 투자비 산출                                                 | D-27~25(3일) |                                     |
| 실내외 공사착수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4(1일)    |                                     |
| 인테리어 공사        | - 공사 실시                                                  | D-24~5(20일) |                                     |
| 교육 실시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7~4(3일)   |                                     |
| 점포 개설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day       |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 개설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가맹 상담, 점포 선정, 임대차 계약, 가맹계약 체결 등의 소요시간과 매장의 규모 및 공사 일정, 인허가 일정 등으로 인해 그 기간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 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 2)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                 |                                                                                                                                                                                                                                                                                                                                                                                                                                                                                                       |
|-----------------|-------------------------------------------------------------------------------------------------------------------------------------------------------------------------------------------------------------------------------------------------------------------------------------------------------------------------------------------------------------------------------------------------------------------------------------------------------------------------------------------------------|
| 점포환경<br>개선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li> <li>○ 환경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li> </ul>                                                                                                                                                                                                                                                                                                                                 |
| 가맹본부 부담<br>비용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판교체 비용</li> <li>○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li> </ul>                                                                                                                                                                                                                                                                                                                         |
| 가맹본부 부담<br>비용비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li> <li>○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li> </ul>                                                                                                                                                                                                                                                                                                                                                                      |
| 지급절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br/>(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li> <li>○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br/>&lt;분할지급 시 절차&gt;</li> <li>○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br/>(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li> </ul> |
| 비용부담<br>제외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li> </ul>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

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지원정책      | 주요내용 | 지원조건 | 지원기간 | 지원금액 | 비고                   |
|-----------|------|------|------|------|----------------------|
| 개점행사비     | 해당없음 |      |      |      | ※ 차후<br>진행시<br>사전 협의 |
| 판촉장려금     | 해당없음 |      |      |      |                      |
| 판촉지원      | 해당없음 |      |      |      |                      |
| 판매용집기무상대여 | 해당없음 |      |      |      |                      |
| 반품지원      | 해당없음 |      |      |      |                      |
| 마일리지      | 해당없음 |      |      |      |                      |
| CRM       | 해당없음 |      |      |      |                      |
| 테스터       | 해당없음 |      |      |      |                      |

### 3. 경영활동 자문

-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대상 및 내용                                                                 | 절 차                                                                                                                                                                                            | 비용부담                                                              | 비 고          |
|----------------|-------------------------------------------------------------------------|------------------------------------------------------------------------------------------------------------------------------------------------------------------------------------------------|-------------------------------------------------------------------|--------------|
| 가맹본부<br>요청 시   | 상품, 설비(집기),<br>판매촉진, 고객관리,<br>위생관리, 교육훈련,<br>회계 등 가맹점 운영<br>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br>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br>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br>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br>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br>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br>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 가맹본부<br>부담                                                        | 문의:<br>가맹관리팀 |
| 가맹점사업자<br>요청 시 | 상품, 설비(집기),<br>판매촉진, 고객관리,<br>위생관리, 교육훈련,<br>회계 등 가맹점 운영<br>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br>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br>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br>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br>경영지도 후 [3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br>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br>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br>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 가맹점<br>부담<br>(가맹금에<br>포함된 통상의<br>경영지도<br>비용을<br>초과한<br>부분에<br>한함) | 문의:<br>가맹관리팀 |

### 4. 신용 제공 등 내역

- ▶ 해당사항 없습니다.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 해당사항 없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 ▶ 당사는 『몬스타쉐프급창』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교육방식         | 기한                                          | 비고   |
|------|-------------------------------------------------------|--------------|---------------------------------------------|------|
| 개점교육 | 메뉴조리, BPS사용교육, 기타교육 등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 마인드 및 기술적 지식 배양 | 실습교육<br>이론강의 | 가맹계약 체결 후<br>1개월 이내<br>개업하기 이전까지<br>이수하여야 함 | 필수교육 |
| 정기교육 | 신메뉴 조리,<br>기타교육                                       | 실습교육<br>이론강의 | 별도 지정                                       | 필수교육 |
| 특별교육 | 신메뉴 교육, 영업방침,<br>행정조치에 따른 소집교육                        | 실습교육<br>이론강의 | 별도 지정                                       | 필수교육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 귀하가 『몬스타쉐프급창』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최소 시간 |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비고        |
|------|-------|--------------------------|-----------|
| 개점교육 | 5일    | 3,300                    | 최초 계약시 이수 |
| 정기교육 | 별도 계획 | 교육실시 7일 전에 장소 등 통지 실비 수준 |           |
| 특별교육 | 별도 계획 | 교육실시 7일 전에 장소 등 통지 실비 수준 |           |

3. 교육·훈련의 주체

- ▶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받아야 합니다. 개점교육 불참 시 오픈 지연, 오픈점 근무가 불가능 할 수 있으며, 정기교육 및 특별교육 불참 시는 점주평가에 반영되어 재계약 등에 손해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에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정기적이며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을 불참한 경우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 · 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관련 계약 조문 |
|--------------------------------------------------------------------------------------------------|----------|
| ①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자는 가맹점의 관리자나 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다.                                      | 제19조 제1항 |
| 6.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제38조 제1항 |
| 4.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39조 제1항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 연번 | 지역 | 명칭 | 소재지 |
|----|----|----|-----|
|    |    |    |     |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 비고 |
|---------------------|----|
|                     |    |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비고 |
|----------------------|----|
|                      |    |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영업팀**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1670-0007)**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1. 차액가맹금 수위 여부
2.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확인서
3.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별첨 1]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가맹희망자 성명 : 서명 또는 (인)